공고 제2026-1호

「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」
입주기업 모집 공고

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창업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, 함께 성장해 갈 (예비)창업자를 모집하오니,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4월 20일

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
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장

1 모집 개요

☐ 모집기간: 2026. 4. 20.(월) ~ 2026. 5. 15.(금) 18:00
☐ 모집인원: 6개사 내외
☐ 모집분야: 제조 및 기술창업 분야 등
☐ 지원내용
- 회의실, 교육장 등 다양한 공간 제공
- 사무실 집기(책상, 의자, 사물함 등) 무상 제공
- 창업교육 및 1:1 전문가 자문 지원
- 창업사업화 및 멘토링 연계 지원
- 워크숍, 세미나, 교류회 등 각종 네트워크 지원
-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

2 모집 대상

☐ 모집대상: 공고 마감일 기준 19세~39세 청년
☐ 신청자격
- 예비창업자: 19~39세 청년에 해당하며, 달서구 소재 증빙이 가능한 자(학교, 직장, 소재지 등)
- 기창업자: 19~39세 청년에 해당하며, 선정 후 1개월 이내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(달서구 중흥로 3, 3층)로 사업자 또는 연구소 등록이 가능한 자

*공동 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1명 이상은 39세 이하인 자

☐ **신청제외 대상**
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-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-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- **예비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타 지역(시 · 군 · 구)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,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게 확인되면 지원 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됨**

· 공고일 이전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(기업) 및 협약체결 후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 ※ 중단(중단처분 · 중도포기)포함

* 지원제외 대상 업종: 제1호 일반유흥주점업, 제2호 무도유흥주점업, 제3호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·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
· 기타 주관기관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3 입주개요

☐ **입주기간**: 2026. 6. 1.(월) ~ 2027. 5. 31.(월) (1년)

***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, 최대 2년 입주**

☐ **입주위치**: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(달서구 중흥로 3, 3층)

☐ **입주공간**: 2인실 2개, 1인실 4개

입주일	구분	면적(㎡)	모집규모	연간 사용료	비고
2026. 6. 1. ~ 2027. 5. 31.	1인실	4.37	4개사	무상	1.5평
	2인실	6.67	2개사		2평
계			6개사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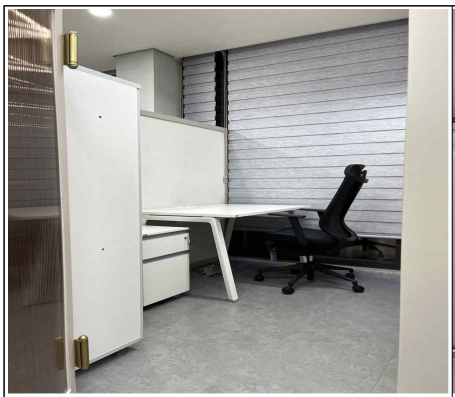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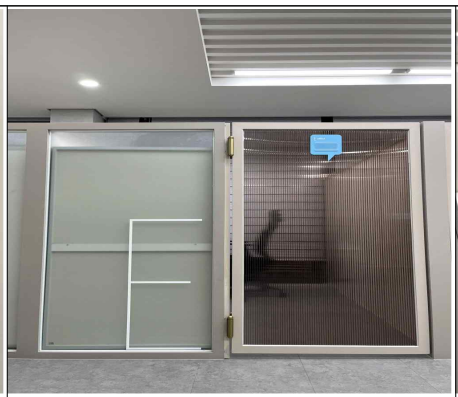

4 선정개요

☐ **선정방법**: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

- 1차 서류심사: 입주 신청 자격요건 검토
- 2차 발표평가: 10분(발표: 5분, 질의응답: 5분) 내외 소요

☐ **평가항목**: 사업성(30), 기술성(40),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경쟁력(30)

☐ **가점사항(우대배점)**

-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,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자(각 1점, 최대 3점)
- 창업경진대회 또는 창업 관련 각종대회 수상경력(각 2점, 최대 6점)
- 특허 또는 기술기반 창업자(5점)
-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수자(멘토링, 아카데미 등)(각 2점, 최대 6점)

※ 우대배점의 경우 최대 10점을 넘을 수 없음

서류접수	→	서류평가 결과 통보	→	발표평가	→	결과통지 및 입주계약
2026. 4. 20.(월) ~ 2026. 5. 15.(금)		개별 안내 (이메일)		2026. 5. 22.(월) ~ 2026. 5. 26.(금) 중 1일(예정)		5월 말

5 신청방법

☐ **신청방법**

-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(https://d-youth.or.kr/) → 창업지원센터 → 프로그램 → 모집공고 →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제출

☐ **제출서류**

- [필수]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- [필수] 창업 및 규정준수 동의서 1부
- [필수] 대표자 이력서(자유양식) 1부
- [필수] 개인(기업)정보 제공・수집・이용 동의서
- [해당자] 가점 및 관련 증빙서류: 사업자등록증, 매출・고용・지식재산권, 수상이력 등

☐ **문의처**

-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☎ 053-628-1006, son@kmu.ac.kr
  *전화 문의가능시간: 평일 09:00 ~ 18:00(점심시간 12:00~13:00 및 공휴일 제외)

[참고 1]

지원 제외되는 업종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	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※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[참고 2]

창업 여부 기준표

<table>
<tr><th>신청기업 구분</th><th colspan="3">상세 구분</th><th>창업여부</th></tr>
<tr><td rowspan="9">개인기업</td><td colspan="3">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3년 이내</td><td>입주 기본요건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타인으로부터
상속/증여</td><td colspan="2">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종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>기존 개인사업자
유지</td><td colspan="2">-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기존 개인사업자
폐업</td><td>이종창업</td><td>-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동종창업</td><td>폐업 3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>폐업 3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- 2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- 2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>기존 법인사업자
유지 또는 폐업</td><td colspan="2">-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 rowspan="11">법인기업</td><td colspan="3">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3년 이내</td><td>입주 기본요건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기존 개인사업자
폐업</td><td>이종창업</td><td>-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동종창업</td><td>폐업 3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>폐업 3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- 2년 초과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>부도/파산 - 2년 까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>동종전환</td><td>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</td><td>개인사업자의
창업자 지위승계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기존 개인사업자
유지</td><td>이종창업</td><td>-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동종창업</td><td>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>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</td><td>창 업</td></tr>
<tr><td>자회사 여부</td><td colspan="2">법인 주주(임원 포함)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>과점주주 여부</td><td colspan="2">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회사형태 변경</td><td colspan="2">동종유지</td><td>창업아님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종</td><td>창 업</td></tr>
</table>

※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입주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**동종의 범위**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kssc.kostat.go.kr

※ **과점주주**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